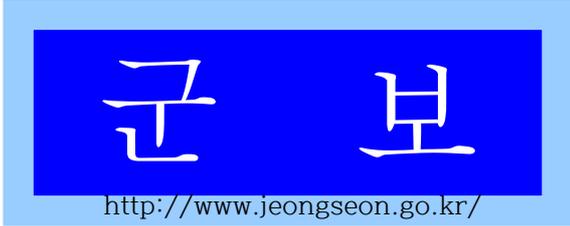




#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제472호 2019. 2. 15. (금)

##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698호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
- 정선군 조례 제2699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
- 정선군 조례 제2700호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11
- 정선군 조례 제2701호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6
- 정선군 조례 제2702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18
- 정선군 조례 제2703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2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실 (전화:560-2213, FAX:560-2592)

# 조 례

제251회 정선군의회(2019. 2. 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8호

##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월 156만원을” 을 “별표와 같이” 로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 월정수당 지급 기준표(제3조제1항 관련)

기준년도	지급 기준 금액
2019년	월 2,120,000원으로 한다.
2020년	2019년 월정수당에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1년	2020년 월정수당에 2020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2022년	2021년 월정수당에 2021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월정수당) 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u>월 156만원을</u>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① ----- ----- <u>별표와 같이</u> ----- ----- -.
제4조(여비) ① ~ ② (생 략) ③ <u>의장·부의장 및 의원의 여비지급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의 한다.</u>	제4조(여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 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u>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정 선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 한다.	<삭 제>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하여 ‘정선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2019년~2022년도 월정수당 금액 변경에 따른 지급기준(안 제3조제1항)
  - 2019년도: 연 2,544만원(월 212만원)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
- 여비 지급기준 개정(안 제4조제3항)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관련 별표 5(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범위)에 의한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제251회 정선군의회(2019. 2. 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699호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를 “제1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② (생략)</p> <p>③ <u>수당을 받고 있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 중 선행순위자 1명에게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u></p> <p>④ (생략)</p>	<p>제9조(호국보훈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u> ----- ----- ----- -----.</p> <p>④ (현행과 같음)</p>

제안이유

- 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호국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사망위로금은 국가유공자에 한해 지급하고 있음.
- 나. 이에 국가보훈대상자 인 유족의 사망 시에도 사망위로금을 지급하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 지급 범위를 개정 함 (안 제9조)
  -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 위로금 지급

제251회 정선군의회(2019. 2. 1.)에서 의결된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0호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아라리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속 문화 체험시설인 아라리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관광객의 지속적 민속 문화 체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정선군 아라리촌(이하 “아라리촌”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아라리촌의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로 37에 둔다.

③ 아라리촌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전통가옥
- 2. 판매시설
- 3. 전시시설
- 4. 놀이마당
-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대시설

④ 군수는 아라리촌의 이용자에게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연계 프로그램) ① 군수는 관광객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라리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둘 수 있다.

② 군수는 아라리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입장) ① 아라리촌은 군민과 관광객·방문객 누구나 무료로 입장한다.

② 아라리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제외하고 연중 입장할 수 있으며, 입장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1. 시설 보수 또는 긴급점검이 필요한 날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날
3.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날

③ 군수는 아라리촌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입장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휴무일과 제3항에 따른 입장 시간의 조정에 관해서는 그 사유·내용 등을 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지체 없이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행위제한 등) ① 이용자는 아라리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민속자료 및 건축물, 시설물 등을 파괴하는 행위
2. 토석, 수목 등을 굴취하여 자연을 훼손하는 행위
3. 취사 및 과실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

② 아라리촌의 각종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한 이용자 등은 해당 시설물을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를 변상해야 한다.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라리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 목적에 타당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선군시설관리공단,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라리촌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기타 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책임)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변조
3. 담보제공이나 양도·전대(轉貸) 금지
4.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한 시설 관리

5. 법령이나 조례 준수, 계약 및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 이행

제8조(준용) 아라리촌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① 군수는 아라리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판매시설 및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단체 등에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지역주민·단체 등은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안이유

- 가. 아라리촌 무료 입장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와 군민 문화체험 공간 제공
- 나. 아라리촌을 비롯한 아리랑센터(박물관), 정선생활문화센터(아리샘터)등과 연계한 시설 이용으로 이용자의 편의 도모

주요내용

- 가. 아라리촌 시설, 연계 프로그램, 무료 입장 규정(안 제2조, 제3조, 제4조)
- 나. 아라리촌 내 행위제한 규정(안 제5조)
- 다. 아라리촌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의무·책임 규정(안 제6조, 제7조)

제251회 정선군의회(2019. 2. 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1호

###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9조 제2항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
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4.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
5.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 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 기능식품에

## 관한 사업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 조제목 “(기금심의위원회)” 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심의위원회” 를 “운용심의위원회” 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한다” 를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영의 성과분석

제11조 중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 을 “기금지출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을 “지방회계법”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 제65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li> <li>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li>3. 그 밖의 수입금</li> </ol>	<p>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식품진흥 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li> <li>2. 법 제8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li> <li>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li> <li>4. 그 밖의 수입금</li> </ol>
<p>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사업</u></li> <li>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u></li> <li>3. <u>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과 향토음식의 발굴·육성·계승을 위한 사업지원</u></li> <li>4. <u>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u></li> <li>5. <u>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u></li> <li>6. <u>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 영업 신고자에 대한 보상</u></li> <li>7. <u>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u></li> </ol>	<p>제4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영업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용자 사업</u></li> <li>2.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소비자단체의 교육·홍보 지원을 포함한다)과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의 교육·활동 지원</u></li> <li>3. <u>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u></li> <li>4. <u>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다</u></li> <li>5. <u>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u></li> </ol>

<p><u>에 관한 사업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에서 정하는 사업</u></p>	<p>6. <u>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u></p> <p>7. <u>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한다)의 급식 시설 개수·보수를 위한 용자사업</u></p> <p>8.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 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u></p>
<p>제6조(기금심의위원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식품진흥기금 <u>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② (생 략)</p> <p>③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u>위촉한다</u>.</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 ----- <u>운용심의위원회</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포함되도록 한다.</u></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u>기금운용계획안</u></p> <p>2. <u>기금결산보고안</u></p> <p>3. (생 략)</p>	<p>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p> <p>1. <u>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u></p> <p>2. <u>기금운영의 성과분석</u></p> <p>3. (현행과 같음)</p>

제11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위생담당주사로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지방재정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  
----- 기금지출관은 보건소장으로 기금출납공무원-----  
-----.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① 지방회계법 -----  
-----  
-----  
-----.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을 원활히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문개정 (안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1조, 17조)  
- 법령과 일치하도록 기금의 재원 추가, 기금의 용도 규정, 식품진흥기금심의 위원회 명칭 수정, 식품진흥기금위원회 심의사항 추가, 회계공무원 명칭 수정, 근거규정 수정, 기금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보장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 수정

제251회 정선군의회(2019. 2. 1.)에서 의결된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2호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을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생 략) 1. (생 략)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제2조(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

## 제안이유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수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상위법령 근거규정에 적합하도록 조문 수정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제251회 정선군의회(2019. 2. 1.)에서 의결된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9년 2월 15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703호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를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를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으로 한다.

제5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법정전염병” 을 “감염병” 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현재조례)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진단서	"	500	요양신청용, 병사용상해
4. 특별진단서	"	2,000	진단용
5. 사체검안서	"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	X-선, 간염검사포함.
7. 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	<u>2,000</u>	
8. 사망진단서	"	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10.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300	
11. 1통초과 발급	"	100	
12. 수질검사 수수료	"	23,100	음용수의 수질기준 등에
가. 색 도		1,300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나. 탁 도		1,300	규정에 의한(보건사회부령
다. 냄새		1,300	제 871호 91.7.4. “별
라. 맛		1,300	표”)음용수의 음용적부
마. 암모니아성 질소		4,000	판단을 위한 수질검사 항
바. 질산성 질소		4,000	목 및 기준임.
사. 일반세균		4,400	
아. 대장균군		5,500	

## 【별표 1】

## 제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개정안)

구 분	기 준	수수료(원)	비 고
1. 근로자 건강진단서	1통	500	
2.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500	
3. 일반진단서	"	500	요양신청용, 병사용상해
4. 특별진단서	"	2,000	진단용
5. 사체검안서	"	5,000	
6. 성별 및 연령감정서	"	2,000	X-선, 간염검사포함.
7. 위생 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으로 정함.
8. 사망진단서	"	500	
9.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	"	500	
10. 기 발급증명서 추가발급	"	300	
11. 1통초과 발급	"	100	
12. 수질검사 수수료	"	-	<u>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u>
가. 색 도		-	<u>[별표]시험수수료 금액표(제7조</u>
나. 탁 도		-	<u>관련)으로 정함.</u>
다. 냄새		-	
라. 맛		-	
마. 암모니아성 질소		-	
바. 질산성 질소		-	
사. 일반세균		-	
아. 대장균군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u></p>	<p><u>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역보건법</u>」 제14조 및 「<u>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u>」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지역보건법</u>」 제25조제2항 ----- ----- ----- ----- ----- -----.</p>
<p>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의한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u>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u></p>	<p>제5조(타법령에 의한 수가) ----- ----- ----- ----- ----- ----- . &lt;단서 삭제&gt;</p>
<p>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와 수수료를 면제한다.</p> <p>1. (생략)</p> <p>2. <u>법정전염병</u>에 필요한 경우</p> <p>3. ~ 10. (생략)</p> <p>② (생략)</p>	<p>제9조(사용료와 수수료 감면) ①-----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감염병</u>-----</p> <p>3. ~ 10.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제안이유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띄어쓰기 적용

- 「정선군보건소 수가조례」 ⇒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나. 상위법령 우선 적용 규정 삭제(안 제5조)

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 변경(안 제1조, 제9조)

라. 제증명 발급 및 수수료 개정(별표)